

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2012.6.8.시행)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, 조문의 내용도 위 법률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‘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
나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조문 신설
 -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 - 목적을 법률 내용에 맞춰 정비(안 제1조)
 - 보호·지원 대상 범위를 ‘노숙인’에서 ‘노숙인 등’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 정의 정비(안 제2조)
 -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문 순서 변경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지원 대상 사업 및 노숙인시설 설치·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 및 제7조)
 - 중간지원주택의 설치·운영 관련 조문 신설(안 제8조)
 -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 조문 신설(안 제10조)
 - 비용의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9조 및 제11조)
 - 그 밖에 상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상충·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문 정비 및 삭제

라. 「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」 폐지

- 2004년 전부개정 된 후 개정된 적이 없어 상위법령 인용 조항이나 문구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,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희망원 운영이 가능하여 폐지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나. 관계법령 :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. 30. ~ 2019. 2. 19.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노숙인 등”이란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“노숙인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3.“노숙인시설 종사자”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“중간지원주택”이란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말한다.

제3조(시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,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, 보호와 재활·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
3.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·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
4. 노숙인 등의 자활·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
5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

제7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을 「대구광역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중간지원주택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주택 운영을 「대구광역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)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대구광역시시립희망원설치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숙인(露宿人)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노숙인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- 나.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- 다.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2. "노숙인시설"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,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.
3. "노숙인시설 종사자"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, 상담,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,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,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·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
3.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
4. 노숙인시설의 설치·확보 및 주거지원·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
5.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
6.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종합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·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·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·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관련 시설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)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숙인일시보호시설: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
2. 노숙인자활시설: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·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3. 노숙인재활시설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4. 노숙인요양시설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노숙인급식시설: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
6. 노숙인진료시설: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비용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정의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 등)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24조(보고)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·퇴소,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소시설: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·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

2. 노숙인종합지원센터: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, 분기마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모아 시설별로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을 작성하고,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: 반기별 1회

2. 노숙인자활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: 반기별 1회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운영위원회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시설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
- 2.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
- 5.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- 6.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1. 시설의 장
- 2. 시설 거주자 대표
- 3.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
- 4. 시설 종사자의 대표
- 5. 해당 시·군·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6.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
- 7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시설의 회계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- 2.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·사고에 관한 사항

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1조(지도·감독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